

규정을 시행하는 위원회(EU) 2021/279

2021년 2월 22일

**추적성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통제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8의 구현을 위한 세부 규칙 수립**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 라벨링

(EEA와 관련된 텍스트)

유럽 위원회,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고려하여,

2018년 5월 30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 라벨링에 관한 규정(EU) 2018/848 및 이사회 규정(EC) 834/2007 폐지를 고려합니다.⁽¹⁾, 특히 그 조항 28(3)(a), 29(8)(a), 30(8), 32(5), 36(4), 38(9), 41(5) 및 43(7)

반면:

- (1) 규정(EU) 2018/848의 제3장은 허가받지 않은 제품 및 물질의 존재를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와 허가받지 않은 제품 또는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하여 운영자를 위한 일반 생산 규칙을 규정합니다. 해당 규정의 이행을 위한 조화로운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 (2) 허가받지 않은 제품 및 물질(EU 규정 2018/848)의 제28조에 언급된 물질의 존재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허가받지 않은 제품 또는 물질의 존재로 인해 유기 또는 전환 제품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제품이 EU 규정 2018/848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사업자가 의심하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적 단계와 제공해야 할 관련 문서를 확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3) 유기농 또는 전환 제품에서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규정 (EU) 2018/848의 제29조(1)(a)에 언급된 공식 조사와 관련하여 연합 전역에서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 조사를 수행할 때 결정해야 할 요소, 공식 조사의 예상 결과 및 최소 보고 의무를 다루는 추가 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 (4) 규정(EU) 2018/848의 제4장은 유기 및 전환 제품의 라벨링과 관련된 특정 조항을 규정합니다. 해당 규정의 시행을 위한 균일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라벨에 특정 표시의 위치와 모양에 관한 몇 가지 추가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 (5) 규정(EU) 2018/848의 V장은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의 인증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이행을 위한 조화로운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자 그룹의 인증을 위한 몇 가지 추가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 (6) 내부 통제(ICS) 시스템의 효율성과 저렴한 운영 비용을 위해 운영자 그룹의 최대 규모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ICS는 내부 통제 및 필요한 교육을 통해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규정(EU) 2018/848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그룹을 인증하는 유능한 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합리적인 수의 구성원을 재검사할 수 있습니다. 규모 제한은 구성원의 업데이트된 목록,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과의 신속하고 정기적인 정보 교환, 적절한 조치의 이행에 대한 추가 보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최대 규모는 운영자 그룹이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존하여 효율적인 ICS를 구축하는 데 충분한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OJ L 150, 2018년 6월 14일, p. 1.

- (7) 준수의 증거를 제공하고 정보 교환과 지식 공유를 허용하기 위해 운영자 그룹이 ICS 목적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문서 및 기록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8) ICS는 운영자 그룹의 인증을 위한 기초를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ICS 관리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 불이행 의심, 회원 정지 또는 탈퇴, 유기농 또는 전환 제품으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의 금지와 같은 인증서를 제공하는 유능 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9) 규정(EU) 2018/848의 VI장은 공식 통제 및 기타 공식 활동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이행을 위한 조화로운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 (10) 회원국의 현재 국가 통제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 통제 및 샘플링에 대한 최소 비율에 대한 규칙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11) 회원국 간 현재 국가별 조치 카탈로그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를 없애기 위해 조치 카탈로그에 대한 공통 템플릿을 수립하고, 불이행 분류 및 적절한 조치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 (12) 유기농 또는 전환 중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일치 의심 또는 확립된 불일치에 대한 정보는 회원국과 위원회 간에 직접 그리고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며, 주로 모든 관련 유관 당국이 공식 조사를 수행하고 규정(EU) 2018/848의 제29조(1) 및 (2), 제41조(1), (2) 및 (3) 및 제42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유기농 농업 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포함하여 해당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절차를 지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규정은 또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유기농 또는 전환 중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일치 의심 또는 확립된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해당 유관 당국에 전달해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규정에서는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이 적어도 다른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과 그들의 유관 당국과 공유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유관 당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이러한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할 의무를 정해야 합니다.
- (13) 이사회 규정(EC) 834/2007을 준수하여 운영되는 제3국의 운영자 그룹⁽²⁾ 및 위원회 규정(EC) 889/2008⁽³⁾ 및 (EC) 제 1235/2008호⁽⁴⁾는 이 규정에서 정한 최대 규모보다 상당히 많은 수의 구성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새로운 운영자 그룹을 설립하려면 해당 법인, ICS 및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의 인증을 위한 필수 요소를 설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영자 그룹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최대 3년의 과도기를 제공하여 새로운 최대 규모를 준수하기 위한 필요한 적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14) 국가적 조치 목록과 관련된 요구 사항은 지금까지 회원국에서 규정(EC)을 준수하여 개발되어 온 기존 국가적 조치 목록의 변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No 834/2007 및 (EC) No 889/2008. 따라서 모든 회원국은 기존 국가적 조치 카탈로그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최대 1년의 과도기를 제공받아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국가적 조치 카탈로그를 필요한 개선 또는 교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 표시에 관한 2007년 6월 28일자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EC) 834/2007 및 규정(EEC) 2092/91의 폐지(OJ L 189, 20.7.2007, p. 1).

(3)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 라벨링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834/2007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2008년 9월 5일자 위원회 규정(EC) 889/2008(OJ L 250, 18.9.2008, p. 1).

(4) 2008년 12월 8일자 위원회 규정 (EC) 1235/2008호는 제3국으로부터의 유기농 제품 수입에 관한 조치와 관련된 이사회 규정 (EC) 834/2007호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OJ L 334, 12.12.2008, p. 25).

(15)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을 위해 이 규정은 규정 (EU) 2018/848의 적용일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16) 이 규정에 규정된 조치는 유기생산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제1조

불이행의 의심이 있는 경우 운영자가 따라야 할 절차적 단계 허가받지 않은 제품 또는 물질

1. 의심이 규정 (EU) 2018/848의 제28조(2)항(b)에 따라 입증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영자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a) 비준수 의심이 유입 유기제품 또는 전환제품과 관련된 경우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i) 유기농 또는 전환 제품의 라벨에 있는 정보와 수반 문서에 있는 정보가 일치합니다.

(ii) 공급자가 제공한 인증서에 있는 정보가 실제로 구매한 제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

(b) 허가받지 않은 제품 또는 물질의 존재 원인이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운영자는 허가받지 않은 제품 또는 물질의 존재에 대한 가능한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2. 운영자가 규정(EU) 2018/848의 제28조(2)(d)에 따라 유능한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에 입증된 의심에 대해 알리거나 의심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운영자는 관련이 있고 가능한 경우 다음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공급자에 대한 정보 및 문서(납품서, 송장, 공급자 인증서, 유기농 제품 검사 인증서(COI))

(b) 로트 식별, 재고 수량 및 판매된 제품 수량을 통한 제품 추적성

(c) 관련성이 있고 가능한 경우 공인 실험실의 실험실 결과.

(d) 샘플을 채취하는 데 사용된 시간, 장소 및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샘플링 시트

(e) 특정 비승인 제품이나 물질과 관련된 이전의 의심에 대한 정보.

(f)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타 모든 관련 문서.

제2조

공식 조사 방법론

1. 규정 (EU) 2018/848의 제38조(2)항을 침해하지 않고 해당 규정의 제29조(1)(a)에 언급된 공식 조사를 수행할 때, 유관 당국 또는 해당하는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당국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a) 해당 유기제품 또는 전환제품의 이름, 로트 식별, 소유권 및 물리적 위치.

(b) 해당 제품이 여전히 유기농 또는 전환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지 또는 유기농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c) 현재 허가받지 않은 제품 또는 물질의 유형, 명칭, 수량 및 기타 관련 정보.

(d) 생산, 준비, 보관 또는 유통의 어느 단계에서, 그리고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의 존재가 정확히 어디에서 감지되었는지, 특히 식물 생산의 경우, 샘플을 수확 전이나 수확 후에 채취했는지 여부.

(e) 공급망의 다른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f) 유기 또는 전환 제품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이전의 공식 조사 결과.

2. 공식 조사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7/625의 제14조 및 제137(3)조에 언급된 것과 같은 적절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s)}.

3. 공식 조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a) 유기제품 및 전환제품의 무결성

(b) 승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물질이 존재하는 출처 및 원인

(c) 규정 (EU) 2018/848의 제29조(2)항(a), (b) 및 (c)에 규정된 요소.

4. 유능한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은 각 공식 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요소에 대한 기록

(b) 이 공식 조사와 관련하여 유관 당국, 다른 통제 당국 및 통제 기관 및 위원회와 교환한 정보의 기록.

제3조

특정 표시의 사용 조건

1. 규정(EU) 2018/848의 제30조(3)에 언급된 식물성 전환 제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에 나타나야 합니다.

(a) 제품의 판매 설명보다 더 눈에 띄지 않는 글자의 색상, 크기 및 스타일, 그러나 전체 표시는 동일한 크기의 글자를 가져야 합니다.

(b) 규정(EU) 2018/848의 제32조(1)항(a)에 언급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코드 번호와 동일한 시야.

2. 규정 (EU) 2018/848의 제32조(1)항(a)에 언급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코드 번호 표시는 라벨에 사용되는 경우 유럽 연합의 유기 생산 로고와 동일한 시각적 영역에 나타나야 합니다.

3. 제품을 구성하는 농업 원료의 재배 장소 표시(EU 규정 2018/848 제32조(2)항 참조)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코드 번호 바로 아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4조

연산자 그룹의 구성 및 차원

사업자 그룹의 회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 그룹에만 등록해야 하며, 사업자 그룹이 해당 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그룹의 최대 인원은 2,000명입니다.

^(s) 식품 및 사료법, 동물 건강 및 복지 규칙, 식물 건강 및 식물 보호 제품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공식 통제 및 기타 공식 활동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7년 3월 15일 규정(EU) 2017/625, 규정(EC) 999/2001, (EC) 396/2005, (EC) 1069/2009, (EC) 1107/2009, (EU) 개정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제1151/2012호, (EU) 제652/2014호, (EU) 제2016/429호 및 (EU) 2016/2031호, 이사회 규정 (EC) 제1/2005호 및 (EC) 제1099/2009호 및 이사회 지침 98/58/EC, 1999/74/EC, 2007/43/EC, 2008/119/EC 및 2008/120/EC,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854/2004호 및 (EC) 제882/2004호 폐지, 이사회 지침 89/608/EEC, 89/662/EEC, 90/425/EEC, 91/496/EEC, 96/23/EC, 96/93/EC 및 97/78/EC 및 이사회 결정 92/438/EEC(공식 통제 규정)(OJ L 95, 7.4.2017, p. 1).

제5조

운영자 그룹의 문서 및 기록

운영자 그룹은 내부통제시스템(ICS)의 목적을 위해 다음 문서 및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a) 운영자 그룹의 각 회원의 등록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자 그룹 회원 목록으로, 운영자 그룹의 각 회원에 대해 다음 요소로 구성됩니다.
 - (i) 이름 및 식별(코드 번호)
 - (ii) 연락처 정보
 - (iii) 등록 날짜
 - (iv) 회원이 관리하는 총 토지 표면 및 그것이 유기 생산 단위, 전환 생산 단위 또는 비유기 생산 단위의 일부인지 여부.
 - (v) 각 생산 단위 및/또는 활동에 대한 정보: 크기, 위치(가능한 경우 지도 포함), 제품, 전환 기간의 시작 날짜 및 수확량 추정치
 - (vi) ICS 검사관의 이름과 함께 마지막 내부 검사 날짜.
 - (vii) 유능 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이 수행한 마지막 공식 통제 날짜와 검사관 이름
 - (viii) 목록의 날짜 및 버전
- (b) 회원과 법인으로서의 운영자 그룹 간에 체결된 회원 계약서. 여기에는 회원의 권리와 책임이 포함됩니다.
- (c) ICS 검사관과 운영자 그룹의 검사 대상 회원이 서명한 내부 검사 보고서. 여기에는 다음 요소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i) 검사 대상이 되는 규정 (EU) 2018/848의 제36조(1)항(a)에 언급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매 및 수집 센터를 포함하여 생산 단위 또는 건물의 위치 및 회원의 이름.
 - (ii) 내부 검사의 날짜, 시작 및 종료 시간
 - (iii) 검사 결과
 - (iv) 감사 범위/경계
 - (v) 보고서 발행일
 - (vi) 내부 검사관의 이름
- (d) 다음으로 구성된 ICS 검사관의 교육 기록:
 - (i) 교육 날짜
 - (ii) 교육의 주제
 - (iii) 트레이너의 이름
 - (iv) 연수생의 서명
 - (v) 적절한 경우, 습득한 지식의 평가
- (e) 운영자 그룹 구성원의 교육 기록.
- (f) ICS 관리자가 불이행 시 취한 조치에 대한 기록.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함:
 - (i) 불이행 시 조치를 받는 회원, 여기에는 정지, 탈퇴 또는 새로운 전환 기간 준수가 요구되는 회원이 포함됩니다.
 - (ii) 확인된 불일치 사항의 문서화
 - (iii) 조치 후속 조치에 대한 문서화
- (g) 관련되는 경우, 다음 활동에 대한 수량 정보를 포함한 추적 기록:
 - (i) 식물 생식 재료를 포함한 농장 투입물의 그룹 구매 및 유통
 - (ii) 수확을 포함한 생산

- (iii) 저장;
- (iv) 준비;
- (v) 각 회원의 제품을 공동 마케팅 시스템에 배송합니다.
- (vi) 운영자 그룹에 의한 제품 시장 출시
- (h) 하청 활동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운영자 그룹과 하청업체 간의 서면 합의 및 계약.
- (i) ICS 관리자의 임명
- (j) ICS 검사관의 임명 및 ICS 검사관 목록.

첫 번째 문단의 (a) 항목에 언급된 회원 목록은 (a)(i)부터 (viii) 항목에 나열된 요소가 수정된 후 ICS 관리자에 의해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내부 검사 또는 공식 통제로 인한 불이행으로 인해 정지 또는 철회된 회원이 있는지 여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6조

ICS 관리자의 알림

ICS 관리자는 다음 정보를 담당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a) 중대하고 심각한 불이행에 대한 의심
- (b) 구매 및 수집 센터를 포함한 회원 또는 생산 단위 또는 사업장의 그룹에서의 정지 또는 철회.
- (c) 유기제품 또는 전환 중인 제품의 시장 출시 금지 사항, 여기에는 관련 회원 이름, 관련 수량 및 로트 식별 정보가 포함됩니다.

제7조

최소 제어 및 샘플링 비율

다음의 최소 비율에 대한 규칙은 각 유능 기관 또는 해당하는 경우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이 불이행 위험에 따라 수행하는 규정 (EU) 2018/848의 제38조(4)에 언급된 공식 통제에 적용됩니다.

- (a) 매년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에 대한 모든 공식 통제의 최소 10%는 사전 통지 없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 (b) 규정(EU) 2018/848의 제38조(3)에 언급된 것에 대한 추가 통제의 최소 10%가 매년 수행되어야 합니다.
- (c) 규정 (EU) 2018/848의 제34조(2) 및 제35조(8)에 따라 면제된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수의 최소 5%는 규정 (EU) 2017/625의 제14조(h)에 따라 매년 샘플링을 받아야 합니다.
- (d) 각 운영자 그룹의 구성원 중 최소 2%는 매년 규정(EU) 2017/625 제14조(h)에 따라 샘플링을 받아야 합니다.
- (e) 운영자 그룹의 구성원인 운영자의 최소 5%, 그러나 최소 10명의 구성원은 매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영자 그룹의 구성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모든 구성원은 규정(EU) 2018/848의 제38조(3)에 언급된 준수 확인과 관련하여 통제되어야 합니다.

제8조

확립된 불이행의 경우 조치

유관 당국은 이 규정의 부록 I에 명시된 균일한 조치를 사용하여 규정(EU) 2018/848의 제41조(4)항에 언급된 국가적 조치 카탈로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적 조치 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규정(EU) 2018/848의 특정 규칙이나 해당 규정에 따라 채택된 위임 또는 이행 행위에 대한 참조가 있는 불이행 목록.

(b) 최소한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위반 사항을 경미, 중대, 치명적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 (i) 규정(EU) 2018/848의 제28조(1)항에 언급된 예방 조치의 적용 및 규정(EU) 2017/625의 제9조(1)(d)항에 언급된 자체 통제.
- (ii) 제품의 유기 상태 또는 전환 상태의 무결성에 미치는 영향
- (iii) 공급망에서 영향을 받은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의 능력
- (iv) 유능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의 이전 요청에 대한 응답.

(c) 다양한 위반 범주에 해당하는 조치.

제9조

정보 교환

1. 규정(EU) 2018/848 제43조(1)의 목적을 위해, 유관 당국은 유기 농업 정보 시스템(OFIS) 및 이 규정의 부록 II에 명시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위원회 및 기타 회원국과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a) 회원국(통지 회원국)은 최소한 다음의 상황에서 위원회 및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통지된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에 통지해야 합니다.

- (i) 의심되거나 확립된 불일치가 다른 회원국에서 온 유기농 제품이나 전환 중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ii) 의심되거나 확립된 불일치가 규정(EU) 2018/848의 제45조(1) 또는 제57조에 따라 제3국에서 수입된 유기농 또는 전환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iii) 의심되거나 확립된 불일치 사항이 통보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제품이나 전환 중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는 하나 이상의 통보 회원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경고 통보)

(b) (a)(i) 및 (ii) 항목에 언급된 상황에서 통보를 받은 회원국은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고 공식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취해진 조치 및 대책에 대해 알리고 통보한 회원국이 입수할 수 있거나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 통보하는 회원국은 통보를 받은 회원국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 통보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빨리 OFIS에 필요한 항목과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체 공식 조사 결과와 관련된 업데이트도 포함됩니다.

(e) (a)(ii) 항목에 언급된 상황에서 회원국이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제3국의 유관 당국 또는 해당되는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2. 규정(EU) 2017/625의 제32조(b)에 언급된 정보 의무 외에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해당 규정의 제4조(3)항 및 제28조(1)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특정 공식 통제 업무 또는 기타 공식 활동과 관련된 특정 업무를 부여하거나 위임한 유능 기관에 유기 또는 전환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심 또는 확립된 불이행에 대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해당 유능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3. 규정 (EU) 2018/848의 제43조(3)의 목적을 위해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 및/또는 하청업체가 서로 다른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해당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은 통제 하에 있는 작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4. 규정 (EU) 2018/848의 제43조(3)의 목적을 위해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 및/또는 하청업체가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운영자 및/또는 관련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유관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이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해당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통제 파일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해당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통제 파일을 지체 없이 새로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규정(EU) 2018/848의 제38조(6)에 언급된 서면 기록, 인증 상태, 불이행 목록 및 이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취한 해당 조치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기관은 이전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기관의 기록에 기록된 불일치 사항을 운영자가 해결했거나 해결할 예정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5. 규정 (EU) 2018/848의 제43조(3)의 목적을 위해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추적성 검사 및 질량 균형 검사를 받는 경우,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은 이러한 검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6. 유관 당국은 해당 당국과 특정 공식 통제 업무 또는 기타 공식 활동과 관련된 특정 업무를 위임 또는 위임한 통제 당국 및/또는 통제 기관 간, 그리고 해당 통제 당국 및/또는 통제 기관 간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제10조

과도기 조항

1.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EC) 제834/2007호, (EC) 제889/2008호 및 (EC) 제1235/2008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 규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 그룹의 최대 규모와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적, 법적, 구조적 변경이 필요한 제3국의 사업자 그룹은 늦어도 2025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제8조에 따라 개발된 국가적 조치 목록은 늦어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1조

발효 및 적용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유럽 연합 공식 저널.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전체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2021년 2월 22일 브뤼셀에서 작성됨.

위원회를 위해
대표
우르줄라 폰 데르 라이엔



부록 I

국가적 대책 카탈로그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균일한 조치

제8조에 언급된

1. 유관 당국은 다음 상황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제8조의 분류 기준에 따라 미준수 사례를 경미, 중대 또는 중대 위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a) 다음의 경우 불이행 사례가 사소한 경우입니다.

(i) 예방 조치가 적절하고 비례적이며 운영자가 시행한 통제가 효율적이다.

(ii) 불이행이 유기제품이나 전환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ii) 추적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에서 영향을 받은 제품을 찾아낼 수 있으며 유기농 생산과 관련하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b) 다음의 경우 불이행이 주요한 경우입니다.

(i) 예방 조치가 비례적이고 적절하지 않으며 운영자가 시행한 통제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ii) 불이행이 유기제품이나 전환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iii) 운영자가 사소한 불일치 사항을 적시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iv) 추적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에서 영향을 받은 제품을 찾아낼 수 있으며 유기농 생산과 관련하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c) 다음의 경우 불이행 사례가 중요합니다.

(i) 예방 조치가 비례적이고 적절하지 않으며 운영자가 시행한 통제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ii) 불이행이 유기제품이나 전환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iii) 운영자가 이전의 주요 불일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하거나 다른 범주의 불일치 사항을 반복적으로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iv) 공급망에서 영향을 받은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의 정보가 없으며 유기농 생산과 관련하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조치사항

유관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은 나열된 위반 사례 범주에 비례하여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준수 범주	측정하다
미성년자	운영자가 불이행 시정을 위한 조치 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주요한	(영향을 받는 작물 또는 동물) 전체 로트 또는 생산 범위에 대한 라벨 및 광고에 유기 생산에 대한 언급이 없음(EU 규정 2018/848 제42조(1)항) 새로운 변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증서 범위의 제한

	운영자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예방 조치 및 통제의 구현 개선
비판적인	(영향을 받는 작물 또는 동물) 전체 로트 또는 생산 범위에 대한 라벨 및 광고에 유기 생산에 대한 언급이 없음(EU 규정 2018/848 제42조(1)항) 규정(EU) 2018/848 제42조(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유기농 생산을 언급하는 제품의 마케팅 금지 새로운 변환 기간 필요 인증서 범위 제한 인증서 정지 인증서 철회



부록 II

제9조에 언급된 OFIS 템플릿

1. 의심 또는 확립된 불일치에 대한 표준 통지 템플릿

* 모국어:

두 번째 언어:

에이.회원국에 통보:

1) 국가:

2) 담당 기관 - 연락처:

* 3) 통보일자 (DD/MM/YYYY):

* 4) 참고사항

비.통보된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

* 1) 국가:

2) 담당 기관/기관들 - 연락처:

기음.제품:

* 1) 제품 종류 :

* 2) 제품/상호명 :

* 3) 원산지 :

4) 제품 설명(포장 크기 및 형태 등) - 복사 또는 스캔한 봉인 또는 라벨을 첨부하십시오.

5) 로트 식별(예: 로트 번호, 납품 번호, 납품일 등):

6) 기타 정보 :

디.추적 가능성:

전체 공급망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 생산자 - 연락처 정보 - 유능 기관 또는 해당되는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

2) 원산지 국가의 처리자/판매자 - 연락처 정보 - 유능 기관 또는 해당되는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

3) 통보 국가의 수입자 - 연락처 정보 - 유능 기관 또는 해당되는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

4) 도매업체 - 연락처 정보 - 유능 기관 또는 해당되는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

5) 불일치 사항이 감지된 통지 국가의 소매업체 또는 기타 운전자 - 연락처 정보 - 유능 기관 또는 해당되는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

권한(들):

다른 배우들:

이차형.불이행, 불이행 의심, 기타 문제 제기:

* 1) 미준수/미준수 의심/제기된 기타 문제의 성격. 어떤 미준수/미준수 의심/제기된 기타 문제가 식별되었습니까?:

* 이는 어떤 측면에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8에 대한 불이행/불이행 의심/기타 문제를 나타내는가?1):

2) 불이행 감지의 맥락/불이행 의심/제기된 기타 문제 - 송장 사본 또는 기타 지원 문서 첨부:

불이행 감지일/불이행 의심일/기타 문제 제기일(DD/MM/YYYY):

불이행 감지 장소/불이행 의심/기타 문제 제기:

3) 샘플/테스트 분석(있는 경우) - 분석 보고서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샘플링/테스트 날짜(DD/MM/YYYY):

샘플링/테스트 장소:

분석 날짜 - 보고서(DD/MM/YYYY):

세부 정보(실험실 이름, 사용 방법, 결과):

발견된 물질의 이름:

검출된 잔류물 수준:

일반적으로 식품(또는 사료)에서 임계값 이상의 수준이 허용됩니까?:

GMO 함량 표시 수준이 너무 높습니까?:

에프.시장 영향:

1)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 차단 또는 마케팅되었습니까?:

2) 어떤 행위자들이 이미 정보를 받았습니까?

3) 다른 회원국도 영향을 받나요? 그렇다면 어떤 회원국인가?:

G.취해진 조치:

1) (제품/운영자/시장에 대한) 자발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2) 의무적인 조치가 취해졌나요?

3) 조치의 범위는 무엇입니까(국가적, 지역적, 수출 등)?

4) 발효일: (DD/MM/YYYY):

5) 기간(개월):

6) 조치의 정당성/법적 근거:

7) 어떤 유관 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조치를 채택했습니까?

시간.기타 정보/평가:

나.부록:

제품의 사본 또는 스캔된 문서(봉인, 라벨 등). 송장, 증빙서류 또는 운송 또는 배송 주문서 사본. 분석 보고서 및/또는 기타 관련 문서:

(i)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 라벨링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8(2018년 5월 30일) 및 이사회 규정(EC) 834/2007을 폐지함(OJ L 150, 14.6.2018, p. 1).

2. 의심 또는 확립된 불일치에 대한 표준 알림에 대한 표준 회신을 위한 템플릿

* 모국어:

두 번째 언어:

답변 버전:

에이.통보된 회원국:

1) 국가:

2) 담당 기관 - 연락처:

* 3) 날짜(DD/MM/YYYY):

* 4) 참고:

비.공고:

1) 국가:

2) 담당 기관 - 연락처:

* 3) 통보일자 (DD/MM/YYYY):

* 4) 통지사항의 참고사항(통지문 A.4항과 동일)

* 5) 제품:

6) 불이행/불이행 의심/기타 문제 제기:

기음.조사

1) 어떤 유능 당국(들)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들) 및/또는 통제 기관(들)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2) 관련된 다른 국가(있는 경우)에서 다른 운영자와 관련 기관(들)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기관(들) 및/또는 통제 기관(들) 간의 협력을 설명하세요?:

3) 어떤 조사 방법/절차가 사용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해당 운영자는 특정 통제를 받았습니까?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하였습니까?:

4) 조사 결과는 무엇입니까?

검사/분석 결과는 무엇입니까(있는 경우)?

불이행/불이행 의심/제기된 기타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불이행/불이행 의심/제기된 다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5) 오염/비준수/비준수 의심/기타 문제의 근원이 제기되었고, 관련자들의 책임이 명확하게 식별되고 확립되었습니까?:

식별된 운영자는 지난 3년 동안 다른 비준수/비준수 의심/기타 문제 제기 사례에 연루되었습니까?:

디.조치 및 처벌:

* 1) 어떤 예방 및 시정 조치가 취해졌습니까(예: 연합 시장 및 제3국 시장에서의 제품 유통/유통과 관련하여)?

2) 불이행/불이행 의심/기타 문제 발생 시 운영자 및/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2):

* 행동방식(서면형, 경고형 등)?:

생산자/가공업체의 인증이 제한, 정지 또는 철회되었습니까?:

조치의 발효일(있는 경우) (DD/MM/YYYY):

조치 기간(있는 경우)(개월):

조치를 채택하고 적용한 유능 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기관 및/또는 통제 기관(있는 경우):

3) 해당 운영자에 대한 추가 검사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4)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 당국 또는 필요한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은 어떤 다른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자형.기타 정보:

에프.부록:

3. 알림 알림 템플릿

1.경보 출처 및 상태

경고 국가:

관할 당국:

2.경고된 국가 또는 국가들

국가	관할 당국	조정자	범위
----	-------	-----	----

3.불이행,사기, 기타 문제 및 이에 대한 의심(이하 "불이행")

제목:

설명:

불이행의 심각성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자들이 이미 통보를 받았나요?

감지 컨텍스트

날짜:

장소:

불이행을 감지한 사람/기관:

문제의 연합 입법(참고문헌):

4.제품 추적성

설명

이름:

브랜드/상호명:

다른 측면:

위탁

위탁/로트/배송 번호:

원산지 :

총 순중량, 부피:

기타 정보:

(2) 규정 (EU) 2018/848의 제29조(1) 및 (2), 제41조(1)~(4) 및 제42조에 따른 조치.

공급망 - 운영자 설명 (이름 - 유형 - 연락처 정보 - 통제 기관/통제 기관(연락처 정보 포함))**5. 취해진 조치**

0. 아직 조치가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제품의 시장 출시 금지(기준 - 날짜 - 수량)
2. 기존 제품으로 다운그레이드(기준 - 날짜 - 수량 - 시작/종료)
3. 사업자 인증 정지(범위부터/까지)
4. 운영자 인증 해제(부터)
5. 기타 조치사항 (자세히 기술해 주세요)

6. 기타 정보**7. 파일**

4. 의심 또는 확립된 불이행에 대한 표준 국제 통지 템플릿

통보 국가:

국가:

통보된 배우 세부 정보:

통보된 배우 유형:

배우 코드:

배우 버전:

이름:

거리: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

우편:

팩스

웹사이트 링크:

URL 사이트:

댓글:

A. 제품:

* 1) 원산지 :

* 2) 제품 종류 :

* 3) 제품/상호명 :

4) 제품 설명(포장 크기 및 형태 등) - 복사 또는 스캔한 봉인 또는 라벨을 첨부하십시오.

5) 로트 식별(예: 로트 번호, 납품 번호, 납품일 등):

6) 기타 정보 :

B. 추적 가능성:

전체 공급망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 생산자 - 연락처 -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

2) 원산지 국가의 가공업체/판매업체/수출업체 - 연락처 -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

3) 통보 국가의 수입자 - 연락처 정보 -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

4) 도매업체 - 연락처 -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

5) 불일치 사항이 감지된 통지 국가의 소매업체 또는 기타 운영자 - 연락처 정보 -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

권한(들):

다른 배우들:

C. 불이행, 불이행 의심, 기타 문제 제기:

* 1) 미준수/미준수 의심/제기된 기타 문제의 성격. 어떤 미준수/미준수 의심/제기된 기타 문제가 식별되었습니까?:

* 이는 어떤 측면에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8에 대한 불이행/불이행 의심/기타 문제를 나타내는가(3)?:

2) 불이행 감지의 맥락/불이행 의심/제기된 기타 문제 - 송장 사본 또는 기타 지원 문서 첨부:

불이행 감지일/불이행 의심일/기타 문제 제기일(DD/MM/YYYY):

불이행 감지 장소/불이행 의심/기타 문제 제기:

3) 샘플/테스트 분석(있는 경우) - 분석 보고서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샘플링/테스트 날짜(DD/MM/YYYY):

샘플링/테스트 장소:

분석 날짜 - 보고서(DD/MM/YYYY):

세부 정보(실험실 이름, 사용 방법, 결과):

발견된 물질의 이름:

검출된 잔류물 수준:

일반적으로 식품(또는 사료)에서 임계값 이상의 수준이 허용됩니까?:

GMO 함량 표시 수준이 너무 높습니까?:

D. 시장 영향:

1)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되었거나 차단되었습니까?:

2) 어떤 행위자들이 이미 정보를 받았습니까?

3) 다른 회원국도 영향을 받나요? 그렇다면 어떤 회원국인가?:

E. 취해진 조치:

1) (제품/운영자/시장에 대한) 자발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2) 의무적인 조치가 취해졌나요?

3) 조치의 범위는 무엇입니까(국가적, 지역적, 수출 등)?

4) 발효일: (DD/MM/YYYY):

5) 기간(개월):

(3)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 라벨링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8(2018년 5월 30일) 및 이사회 규정(EC) 834/2007을 폐지함(OJ L 150, 14.6.2018, p. 1).

6) 조치의 정당성/법적 근거:

7) 어떤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조치를 채택했습니까?

F. 기타 정보/평가:

G.부록:

제품의 사본 또는 스캔된 문서(봉인, 라벨 등). 송장, 증빙서류 또는 운송 또는 배송 주문서 사본. 분석 보고서 및/또는 기타 관련 문서:

(*)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